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4. 3. 27.(수) 15: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불참위원 : 없음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14차, 제15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4-16-048)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다. 나. 별지와 같이 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일진다이아몬드(주)가 신청한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변경승인 신청 현황입니다. 개요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주)는 '23년 12월 21일 (주)전주방송 주식 40%를 일진홀딩스(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18일에 위원회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2월 위원회에서는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3월 13일과 14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4>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5> 심사 항목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여 심사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일진다이아몬드(주)의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일 그룹 내에서 소유구조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실질적 지배구조의 변화 없이 우량한 재무능력을 가진 자회사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방송법 심사 항목에 따라 살펴본 결과 최다액출자자 승인 요건에 현저히 반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및 의견청취를 통해 확인한 사항 중에 이행 담보 및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7> 검토 의견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주)의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조건 부과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둘째, 1년 이내에 일진다이아몬드(주)의 지주회사 지정 해제, 셋째, 일진다이아몬드(주)의 (주)전주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수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주회사 지정해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는 6개월의 기한을 건의하였으나, 신청인 측이 이행각서 제출 과정에서 법정 기한인 1년으로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1년으로 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8조 위반은 발생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도 해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되면 금주 중으로 변경승인 결과를 통보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먼저 이번 변경승인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분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변경승인 신청은 실질적 지배구조의 변화 없이 재정적 능력이 더 나은 회사의 자회사로 전주방송이 편입되는 건입니다. 신청인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전주방송을 소유하던 지주회사의 동일 계열회사이자 상장기업으로서 사회적 신용 및 방송사를 지원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인은 향후 전주방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투자계획은 전주방송의 2023년도 재허가 신청서 기재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그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 이행각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최다액출자자 신청을 승인하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처의 의견과 같이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구체적인 투자계획의 수립 제출 등의 변경승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무처에서는 변경승인 이후에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처에서는 변경승인 후속 절차 등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부과된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나.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4-16-049)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나>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방송지원정책과장

-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채널에이에 대해 [별지1]과 같이 조건 및 부과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24년 4월 22일부터 ‘28년 4월 21일까지 4년으로 한다. 나.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별지2], [별지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24년 4월 1일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4년으로 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승인 유효기간이 ‘24년 3월 31일 만료되는 (주)와이티엔·(주)연합뉴스티브이와 ‘24년 4월 21일에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은 2월 19일부터 2월 23일 총 5일간입니다. 심사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편PP는 심사결과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주)채널에이는 652.95점을 획득하였으며,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항목은 없었습니다. 보도PP 심사결과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주)와이티엔은 661.83점, (주)연합뉴스티브이는 654.49점을 획득하였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항목은 없었습니다.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자 모두 지난 ‘20년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방송의 독립경영을 위해 최다액출자자와의 대표자 겸임 및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주)채널에이,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개선이 미흡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됨.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한 내부 게이트 키핑 시스템 및 반론 보도 매뉴얼 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과 같은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장기적으로 콘텐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신기술 장비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주)채널에이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특정 장르의 편중과 투자계획 대비 실적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 추가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주)와이티엔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최다액출자자가 확약한 조건이 보다 명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과 연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 재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다액출자자와의 광고 영업대행 및 수수료 지급 문제 해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자별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먼저 (주)채널에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안전장치로 다수의 위원회와 팩트체크 조직을 운영 중이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충실한 콘텐츠 투자계획이 마련,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관련한 개선이 미흡하여 지속적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와이티엔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변경 이후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추가 계획을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홍보성 기사 강요 및 불리한 내용 제외 등 최다액출자자의 이해관계가 보도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오보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래픽 콘텐츠 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주)연합뉴스티브이 관련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제고와 오보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시스템이 미비하므로 관련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주)연합뉴스티브이로부터의 광고 영업독립 계획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방송사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방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7> 검토 의견입니다.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은 3개 사업자 모두 중점심사사항 과락 없이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 하였으므로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의결 대상이며, 재승인 유효기간은 4년에 해당함. 또한,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건 및 권고 사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는 제고하되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유지·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내용, 향후 위반의 소지가 적거나 사업자의 제도 개선완료 등으로 재부과 필요성이 적은 내용은 삭제·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따라 팩트체크·취재윤리 제도 및 교육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채널에이의 경우, 콘텐츠 투자계획에 관한 추가 개선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하여 마련·이행하도록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20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중 일부는 향후 재승인 기간 지속적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하고, 이행 완료된 취재윤리 관련 조치에 관한 조건 등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와이티엔은 지난 2월 7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와이티엔의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새로운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하여 방통위에 제출·이행하고, 최다액출자자의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며,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건이 부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에는 최대액출자자로부터 독립하여 재정적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대액출자자로부터의 기자·PD 직군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25년부터 (주)연합뉴스의 (주)연합뉴스티브이 광고 영업대행을 해소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승인장을 교부한 뒤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고, '24년도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역시 심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심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분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련 법령과 기본계획,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주)채널에이,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등 3개 사업자 모두 심사 평가 점수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재승인 의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개 사업자 모두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대 초반에서 660점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미흡한 평가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각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각 사업자별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관행적으로 부과하였던 조건 중 위반의 소지가 적거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리고 사업자의 경영권을 불필요하게 또는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우 등은 조건에서 삭제·축소하거나 권고로 하향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개 사업자 공통조건으로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전문기관 등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및 그 결과 공개 등을 부과하였고, 이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건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주)채널에이는 콘텐츠 투자 관련 추가 개선 계획 마련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방송심의 규정 및 선거 방송 심의규정 준수, 협찬 사실 고지, 외주 제작비 산정 및 지급 기준 준수, 최초 승인 주주 구성 의혹 관련 협약서 내용 유지, 장르별 편중 및 직원 파견 개선 등 2020년도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 및 권고사항 중 당시의 부과 취지가 계속 유지되고, 향후 재승인 기간 동안 지속적인 이행을 필요한 일부 조건 및 권고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와이티엔의 경우 2024년 2월 7일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최대액출자자에게 부과된 조건의 명확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최대액출자자와 협의된 (주)와이티엔 경영 및 투자계획 제출 이행, 방송의 사적 이용 금지, 최대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는 최대액출자자와의 독립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를 조건으로 새로 부과하고, 2020년 재승인 권고사항이었으나 이행이 미흡했던 최다액출자자 직원 파견 해소를 조건으로 상향하였으며, 2025년 이후 최다액출자자의 광고 영업대행 금지 조건을 수정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별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조건 및 권고사항의 부과 역시 방송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의결 이후 3개의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관련 조건과 권고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고, 사무처에서는 향후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 역시 엄정한 절차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칙과 지난 지상파 재허가 및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련 조건들을 검토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등을 위해 유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는 조건 등은 계속 부과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건 등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3사 공통으로는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개선 계획 제출, 미디어전문 경영인 제도 운영,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투자계획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고, 와이티엔에 대해서는 보도의 독립성 보장,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한 투자계획 제출 등의 내용을 재승인 조건에 충분히 반영해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협약금 등 내부거래 개선 계획 제출과 직원파견 해소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각 방송사는 이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승인 후속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조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찬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해선 방송광고정책과장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사항입니다. ‘22년 9월 (주)SBS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23년 7월 2차 시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4년 2월에는 3차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피심인은 ‘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이며, 미디어랩 제6조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앤씨의 40%를 보유한 최대액출자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SBS의 일반 현황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미디어랩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미디어랩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통위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 미디어랩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은 기업집단 태영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22년 5월 1일 이후에도 미디어랩사 (주)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하여 미디어랩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방통위가 소유제한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해 ‘22년 9월 7일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3년 7월 5일 2차 시정명령을 피심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이행 기한 ‘24년 1월 18일까지 이를 미이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의견입니다. (주)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으로 (주)에스비에스가 포함된 태영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SBS의 미디어랩법 제13조 제3항 위반상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실사단계이기에 태영기업집단의 정확한 자산총액 수치를 공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법 위반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귀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건상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3차 시정명령 절차도 공정위의 발표 시까지 잠정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3차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피심인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해제되어 대기업 소유제한 위반상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직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디어랩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랩법 제42조

제2호 벌칙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여부는 방송사 소유제한 위반 주주에 대한 처분 전례에 따라 3차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이후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정조치(안)입니다. (주S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디어랩법 제13조 제3항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함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4월 초에 3차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5월 초에 있는 공정위 공시 사항을 확인하고 10월에 있는 제3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SBS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즉 미디어랩법 제13조 제3항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SBS는 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이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인, 즉 미디어랩사인 (주SBS M&C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랩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미디어랩사의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SBS는 현재도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종전 1차 및 2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SBS가 포함된 태영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소유제한 법령의 개정이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하여 미디어랩법에 의한 관계기관 고발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되, 3차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조금 전에 보고자가 보고한 것처럼 9월 초에 발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라.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4-16-051)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라>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혜선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3년 7월 5일 (주)카카오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24년 2월 2차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지난 2월 29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피심인은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로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방송광고대행자 (주)SM C&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미디어랩법 제6조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엠앤씨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주)카카오 일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입니다. 미디어랩법 제1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방송광고대행자는 미디어랩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미디어랩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통위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 미디어랩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은 방송광고대행자인 (주)SM C&C의 특수관계자로서 미디어랩사 (주)SBS M&C의 주식을 10% 소유하여 미디어랩법 제13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의견입니다. 소유제한 위반상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주)카카오의 법 위반 사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불가피하며, 다만 (주)SBS M&C 주식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등 위반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주)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디어랩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함. 향후 계획입니다. 4월 초에 2차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10월에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주)카카오가 미디어랩법 제13조 제4항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이 부분 관련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주)카카오는 현재 미디어랩사인 (주)SBS M&C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랩법 제13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광고대행자는 미디어랩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송광고대행자인 (주)SM C&C의 특수관계자인 (주)카카오가 미디어랩사인 (주)SBS M&C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현재도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7월에 1차 시정명령 이후 (주)카카오가 (주)SBS M&C 주식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등 소유제한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이런 법 위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2차 시정명령의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는 사무처 원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마.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4-16-052)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마>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소현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2023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가대상입니다. 대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위성 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총 153개 사업자, 370개 방송국입니다. 전년대비 1개 사업자와 1개 방송국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DMB가 지난해 12월 폐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기준입니다. 평가 영역입니다. 「방송법」 제31조 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내용 영역에는 프로그램의 질, 프로그램의 수상실적,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등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성 영역에는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어린이·재난방송·공익광고·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등 1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 영역에는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평가 등 1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 방송심의 관련 규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오보 관련 결정,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4개 항목은 감점 적용을 합니다. 전년대비 변경사항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운영 영역 내에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을 신규로 평가합니다. 평가세부기준은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 및 환경 경영노력 등 평가입니다. 적용대상 방송사는 8개 사업자로 지상파TV 4개사, 종합편성PP 4개사입니다. 평가 배점은 가점 10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절차입니다. 먼저 방송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방송평가지원단에서 조사·검토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방송평가지원단이 조사·검토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방송평가 결과를 공표합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반영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4월~5월간 사업자 설명회, 사업자 제출자료 접수, 6월~8월간 방송사 제출자료 조사·검토를 거쳐 9월~10월간 방송평가위원회가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10월 4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공표할 예정입니다. [별지]로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 제도는 방송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방송평가는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 370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방송실적을 평가합니다. 이번 방송평가에서 전년대비 달라지는 점은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그 운영 영역에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신규 평가항목이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2022년도에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이번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방송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항목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방송평가 항목 및 배점을 보면 프로그램 관련 수상 실적 부분의 배점이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TV가 약 7.1%, 라디오가 11.7%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라디오 방송은 텔레비전 방송보다 프로그램 관련 수상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전체 총점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라디오가 TV보다 더 높다는 것은 사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평가제도 개선 시 이 부분을 포함한 여러 문제 항목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송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평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방송 환경 변화와 시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세부기준과 절차도 평가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나중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고 기준도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방송평가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평가', 소위 ESG 관련 평가가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좀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는 그 절차와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고, 현재의 방송평가 기준을 잘 살피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챙겨보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안건 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대량문자메시지 유통시장의 건전화 및 불법스팸 전송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대량문자 전송 단계에서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인 문자재판매사에 한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불법스팸 근절의 시급성, 법제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전송자격 인증과 관련한 사업자 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사업자를 포함한 연구반을 운영하여 올 3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임원 간담회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전송자격인증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전송단계에서 문자중계 사업자·문자재판매사업자 간 계약관계 관리 강화 노력 등 불법스팸 전송예방을 위한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은 사업자인증제 자율시행 준비기간을 감안, 신규 문자재판매사업자는 '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입니다. 인증 주체 관련 문자중계 9개사가 문자재판매사를 대상으로 공동 인증하고, 인증 절차 관련해서는 문자재판매사가 전송자격 인증을 신청하고, 운영기관이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운영관련 중요사항 협의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정부, 사업자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사업자별 역할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는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송자격인증제 운영비 지원 및 감독 등을 수행하고 문자중계사는 전송자격인증 받은 문자재판매사에 한해 문자를 중계하고, 표준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송차단,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수행합니다. 문자재판매사는 전송자격인증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와의 거래 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료제출, 정기 및 수시점검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제가 자율 시행되면 대량문자 전송단계에서

불법스팸이 상당 부분 감소할 뿐 아니라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도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불법스팸 전송예방으로 피싱 등 미끼 문자가 감소되고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된 가이드라인이 6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11월에는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송자격인증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법스팸 근절이 시급하기 때문에 법제화 이전에 대량 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방통위는 작년 11월에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반을 운영하였고,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KT, LGU+, SKB 등 9개의 문자중계사가 1,175개의 문자재판매사를 대상으로 공동인증을 하며, 정부사업자,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통사,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예방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감소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에서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53분 폐회 】